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2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양금희·지성호·정운천

김용판 · 윤창현 · 이명수

김예지 • 윤재옥 • 서일준

홍문표 • 전봉민 • 강대식

강민국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·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견기업을 투자·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26조). 법률 제 호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"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"을 "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)	제26조(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)
정부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	
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	<u>중소기업(이</u>
<u>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</u> 이 사	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 및
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	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
록 투자·융자 등의 금융지원을	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
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	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